의 안 번 호	2123	【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30.(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7. 13.(목)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코자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노인복지관(함월, 중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2)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 업무 전반

○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3)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정

4) 위탁기간

○ 함월노인복지관: 2023. 10. 1. ~ 2028. 9. 30.(5년)

○ 중구노인복지관: 2024. 1. 1. ~ 2028. 12. 31.(5년)

다.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홍정식)

○ 본 위탁 동의안은 함월 및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 임.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